
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검토 질의에 대한 답변
-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-

2012. 01. 06(금)

서울특별시교육청 책임교육과

서울학생인권조례안 재의 검토 질의에 대한 답변

【질의 1】

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에 대한 법률검토 진행의 의도는?

【질의 2】

2011년 11월 21일 교육청 행정감사 시 서윤기 시의원 질문 -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학생 인권 조례 존중하겠다고 부감님이 답변 - 지금도 유효한가, 변화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?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인가?

【질의 3】

조례안에 대한 재의 사유는 '공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' 또는 '상위법 위반' 해당되는 경우뿐인데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가?

【질의 4】

서울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교육감의 지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?

위와 같은 질의 내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.